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57호
- 나. 제 안 자 : 김광수 의원 외 28명
- 다. 제안일자 : 2021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 등 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유지함으로써 신용악화를 방지하고 재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추진 배경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경제전반이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특별 보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적 지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 상황 복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고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의 경우 보증업체 중 10.9%가 휴·폐업하였으며, 2019년 말 대비 4.3%포인트¹⁾ 증가하였음.

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19년 12월말 기준 보증기업 대비 폐업률은 6.6%로, 2021년 4월말 (10.9%)과 폐업률만 비교하였을 때, 4.3%포인트 증가하였음.

- 그러나 현행 법령상 재단은 사업자 보증만을 할 수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폐업과 동시에 폐업비용 부담과 대출금 조기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임.

다. ‘개인’ 을 포함한 보증대상의 확대(안 제2조제2호 및 제5조)

- 개정안은 신용보증의 대상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에서, 재단이 보증 중인 폐업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u>소기업 및 소상공인</u> ”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u>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u> ”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을 말한다.
제5조(신용보증 대상)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u>소기업 및 소상공인</u> (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5조(신용보증 대상) 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u>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u> (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개인” 을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신용도 및 소득, 재산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시는 현재 부재한 상태로, 입법예고(6.8.~6.28.) 중인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지원 대상 제정(안)」에서는 ▶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폐업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95%이거나 연간 소득 8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이면서, 부채차감 후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정하고 있음.
- 정부는 재단에서 보증 중인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6월말 국무회의 심의²⁾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참고자료 2].
- 정부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프로그램(가칭 “브릿지보증”)을 신설하고, 보조금을 편성하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 심의부터 공포까지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 법령과 고시가 시행되면 재단은 “개인”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업자 보증만을 실시하고 있어 일시상환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던 폐업 소상공인 등을 브릿지보증으로 전환하여 원금 상환을 유예함과 동시에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

2) 6.17.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 되었으며, 6.21.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

- 서울시는 브릿지보증을 시행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매칭으로 320억원³⁾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음.
 - 운용배수 5배⁴⁾ 적용 시 1,600억원까지 브릿지보증이 가능해 약 5,300명⁵⁾ 폐업사업자가 입법적 혜택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입법·정책적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개인보증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태훈	02-2180-8063

3) 국비 80억, 시비 240억

4)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브릿지 보증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5배 내외의 운용배수로 관리하라고 권고하였음. 320억원 × 5배 = 1600억원

5) 현재 재단의 1인당 평균 보증금액은 약 3,000만원으로 산정되며, 공급액 1,600억 ÷ 평균 보증금액 3,000만원 = 약 5,300여명

[참고자료 1] 중소기업부공고 제2021-361호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안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일 것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단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영위회사 제외)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중소기업부공고 제2021-274호

대통령령 제 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 법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중이나 폐업한 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생략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